

의안번호	2209234
의 퇴 인	서삼석 의원
회 답 일	2025. 5. 9.
추계번호	25A1824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 촉진을 지원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에 9,700만원, 2030년에 1억 1,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2,300만원(연평균 1억 500만원)으로 추계됨

- 다만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, 해당 지원 대상자의 변리서비스 수요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(안 제8조의2) 및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(안 제26조의2)	97	101	104	108	112	523	10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2(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)	○ 정부는 사회적 약자 및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(이하 “사회적 약자등”이라 한다)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26조의2(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)	○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함(제3항) - 6.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2(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)	○	○ 법 제26조의2(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)에 따른 현행 사업은 법 제8조의2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하나의 재정수반요인으로 가정하고 추계함
2	안 제26조의2(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법 제26조의2(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)¹⁾에 따른 현행 사업은 법 제8조의2²⁾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안 제8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사항은 하나의 재정수반요인으로 가정하고 추계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‘농어업인’을 현행법의 사회적 약자 범위에 포함하여 발명 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특허청은 현재 법 제8조의2 및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소기업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(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)
 - 관련 사업: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, 2025년 예산 22억 1,900만원

1) 「발명진흥법」 제26조의2(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)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(이하 “상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2) 「발명진흥법」 제8조의2(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)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2024년 주요 실적: 심판·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137건, 서류작성 지원(명세서, 의견서) 624건, 지재권 상담 9,749건
 -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행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나, 지원 대상자 확대에 신규 상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
 - 개정안의 농어업인은 “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”를 말함(안 제26조의2제3항제6호 신설)
- 개정안의 지원 대상인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이나 특허 관련 상담 등 변리서비스의 수요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변리사 1명을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함
- 2025년 예산상 동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(22억 1,900만원) 중 변리사(정원 16명 기준) 인건비는 총 14억 9,300만원으로, 1인당 평균 인건비는 9,331만원으로 추정됨
 -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 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변리사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9,700만원, 2030년에 1억 1,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2,300만원으로 추계됨
 - 추계기간 동안 인건비에 대해 NABO 명목임금상승률³⁾을 적용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농어업인에 대한 공익 변리서비스 제공 등	97	101	104	108	112	52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NABO 명목임금상승률(%) 전망치는 다음과 같음

	2026	2027	2028	2029	2030
NABO 명목임금상승률(%) 전망	3.9	3.8	3.8	3.8	3.8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